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660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5.9.30.일자로 협약이 만료됨 (’22.10.1.~’25.9.30.)

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 상담 등 지원을 총괄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다. 법에서 정한 보육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집 지원 및 컨설팅) 보육과정 컨설팅,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서울특별시 0세 전담반 교사 교육 등

- (양육자 지원) 양육코칭센터,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 지원, 양육상담, 공통 부모교육 지원 등
- (보육교직원 지원)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 (홍보·협력) 운영사업 홍보 및 육아관련 정보 공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사업 추진 등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4.1.)

○ 추진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는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 특히 부모가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역세권청년주택 1층 (규모 : 1,079.75㎡)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등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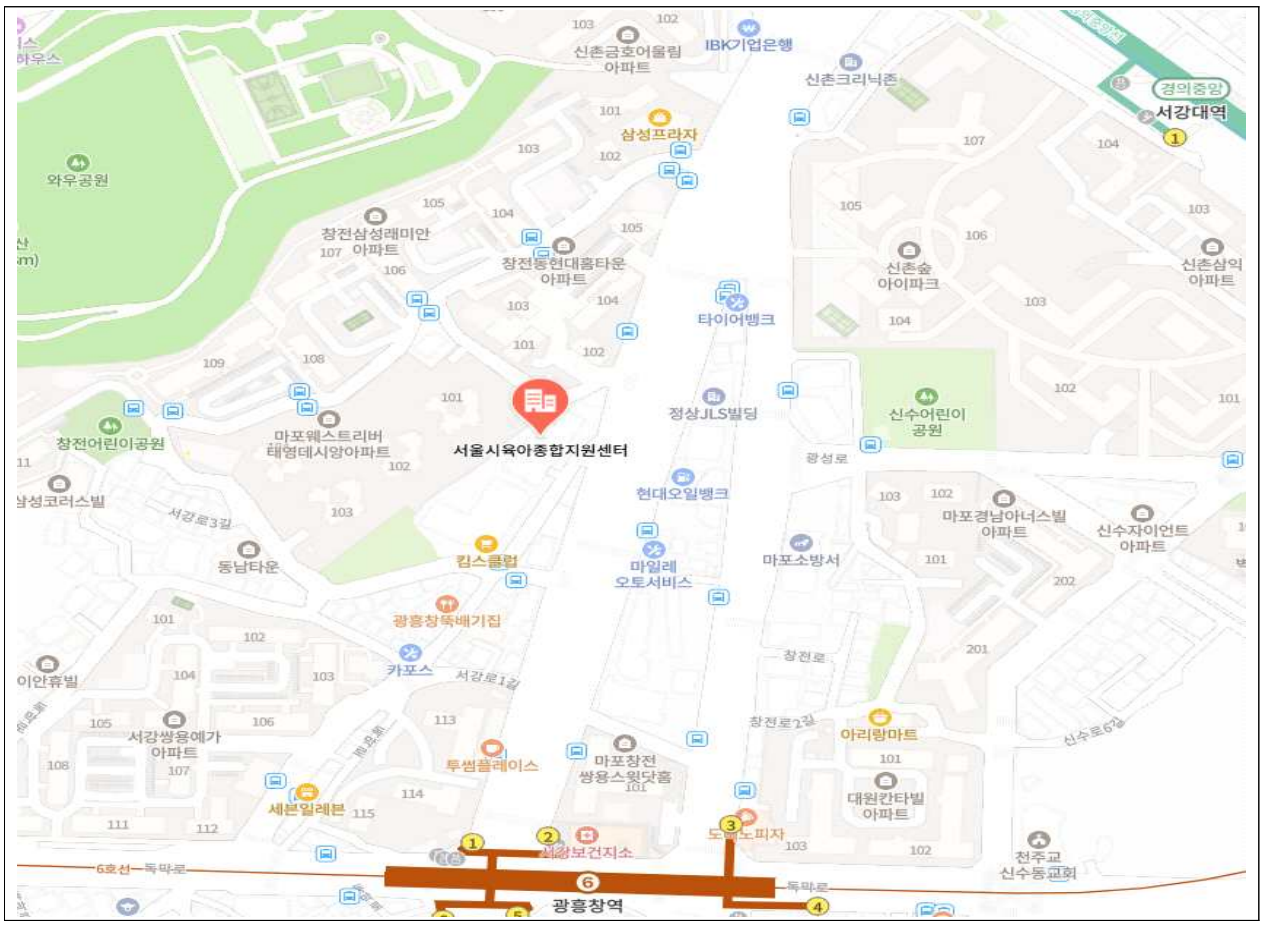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현 위탁기간	'25년 위탁금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서강로 75-16	숙명여자대학교	'22.10.1.~'25.9.30.	2,031백만원

마. 민간위탁기간 : '25.10.1.~'28.9.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31백만원(시비100%)

○ 산출근거

- 인건비 912백만원, 사업비 944백만원, 운영비 172백만원, 기능보강비 3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3.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 **제13조(구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이성민 (☎2133-5093)